

부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가단3001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다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23. 2.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D는 1983. 9. 14. 별지 목록 기재 대지에 관하여는 1983. 9. 12. 매매를 원인으로, 건물에 관하여는 1983. 9. 13.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상속 및 등기

(1) D는 2023. 1. 4.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E, C, F이 있는데, 피고가 3/9, 자녀 3명이 각 2/9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와 자녀 3명은 2023. 2. 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보전채권

(1)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1차전1605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25. ‘C는 원고에게 29,032,342원 및 그 중 18,872,410원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1. 9. 24.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1차전1448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7. 28. ‘C는 원고에게 42,452,132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1. 8. 18. 확정되었다.

(3) 그리고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1차전1930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26. 'C는 원고에게 19,366,172원 및 그 중 10,906,463원에 대하여 2021.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1. 11. 13. 확정되었다.

(4)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금액을 합산한 122,366,315원(= 39,811,456원 + 57,424,247원 + 25,130,612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지분대로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하여 사실상 단독소유의 재산이라거나 C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도 없어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공동상속인인 E, F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별지